

제17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
(제2차 본회의)

2011. 7. 18.(월) 10:00~

조례안 심사보고서

=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등 6건 =

총무위원회

【 목 차 】

1.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	-----	2
2.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	-----	5
3.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	-----	8
4.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	12
5.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-----	15
6.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	-----	17

<의안번호 제2011 - 42>

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년 7월 4일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년 7월 4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7월 12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노인복지법」 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1조, 제2조).
- 2). 조례의 지원대상을 정함(안 제3조).

- 3).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범위와 경로당의 이용인원, 시설규모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4).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.
- 5).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6).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 작업장운영 등 수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.
- 7). 지원금의 반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복지분야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를 비롯한 상호정보 교환과 유기적인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 복지시설인 경로당 육성 지원 및 이용환경 개선으로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
-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하였고 경남도내에서는 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음.
- 그동안 집행부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비를 일정하게 지원해 오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련 시설의 예산지원 방법과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는 경로당에 대한 효율적인

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

-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년 7월 4일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년 7월 4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7월 12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2005. 5월 조례 제정 이후 추진위원회의 운영실적과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실적이 없고, 전시행정 이미지 등으로 군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여러 현실적 정황에 비추어 그 존치 필요성이 회의적인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1). 지원(제4조)

-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

2). 추진위원회 설치(제5조)

-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범 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

3).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(제7조)

- 제자리 찾기 운동을 위한 주요사항의 기획·홍보 및 심의·의결
- 각종 민간단체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
- 제자리 찾기 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폐지 조례안은 2005년 5월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“범 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
- 조례 제정 이후 추진위원회의 운영실적과 제자리찾기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실적이 없고, 전시행정 이미지 등으로 군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현실적 정황에 비추어 그 존치 필요성이 회의적인 상황임.
- 또한, 이 조례는 당시 경상남도 특수시책 일환으로 추진 하였으며 경남도 지방자치단체 중 14개 지자체는 제정하였고 5개 지자체는 제정하지도 않았으며, 우리군에서도 제정 당시 한차례 심의가 보류되는 등 논란이 있었던 조례로 현재 경남도를 비롯한 3개 지자체가 폐지를 하였고 나머지 시군에서도 폐지를 검토 중에 있음.
- 따라서, 이 폐지 조례안은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볼 때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, 폐지에 따른 문제점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〔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〕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년 7월 4일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년 7월 4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7월 12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거창승강기산업밸리에 승강기산업체를 집적하기 위한 투자유치 촉진 및 승강기R&D센터 지원사항과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투자계획 이행 확보, 지원의 취소, 지원금의 환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밸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.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내용에 맞게 신설되는 용어의 뜻을 추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.
- 2). 승강기산업 집적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그 세부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).

- 지원사업의 범위는 승강기산업체 유치 및 육성, 승강기산업 집적화, 승강기 기술개발 및 신상품 개발, 승강기산업단지 조성·분양 및 임대사업, 승강기 인력양성, 승강기산업의 교류협력·마케팅 등(안 제5조)
 - 승강기산업체에 공유의 토지 임대 지원(안 제6조)
 - 수도권 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가 벨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의 지원(안 제7조)
 - 승강기산업체가 집단화하여 벨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「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특별지원에 해당될 경우의 지원(안 제8조)
 - 승강기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승강기산업체의 기술개발 비용지원(제9조)
 - 승강기산업체의 한국형 중·고속형 표준모델 공동브랜드 개발 및 생산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(안 제10조)
 -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의 벨리 이전,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발생하는 물류비 손실분 지원(안 제11조)
 - 승강기산업체의 벨리 입주와 벨리 내 입주 승강기산업체의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숙소,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지원(안 제12조)
 - 벨리 조성 및 승강기산업체 유치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(안 제13조)
 - 승강기R&D센터가 승강기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장비 지원 등 지원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공무원 파견 지원(제14조)
- 3).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투자 이행담보와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5조, 제16조).

- 보조금 운영상황의 보고·관계서류의 제출 및 검사
- 관리대장 작성
-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조치
-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상 영위하고, 업종 전환 시 군수의 사전승인
-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

4). 그 밖에 투자유치 촉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및 산업구조 고도화,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두고,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위임사항을 규정함(안 제17조, 제18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승강기산업밸리의 원활한 조성과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산업구조 고도화 등 승강기산업의 육성·지원과 사후관리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밸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투자유치 촉진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
-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

가. 발의자 : 총무위원회

나. 수정내용 : 별첨

- 제3조(군수의 책무)□□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□□를
⇒ □□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□□로 수정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승강기산업벨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제3조(군수의 책무) 군수는 벨리 조성 과 승강기산업의 육성·발전에 관한시 책을 수립하고, 기반시설, 인력양성,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항 을 <u>지원하여야 한다</u> .	제3조(군수의 책무)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지원할 수 있다</u> .

〔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〕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년 7월 4일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년 7월 4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7월 14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세 관계법령 분법으로 「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 표준안」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명칭,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인용조문 및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규정 신설에 따른 별지 서식 등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. 조례의 제명과 포상금의 명칭 및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 표준조례안에 맞게 정비 함(제명, 안 제2조제1항·제3항 단서, 제5조제1항).
-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⇒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
 - 거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
⇒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

2).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경과연수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지급대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함 (안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별지 제1호서식).

-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⇒ 1년차의 체납액
-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 ⇒ 2년차의 체납액
- 체납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 ⇒ 3년차 이상의 체납액

3). 취득세 통합에 따라 탈루·은닉 취득세원의 발굴 및 징수기준이 되는 취득일을 '납세의무성립일'로 일원화하여 혼선을 방지함 (안 제3조 제1항제5호).

- 납세의무성립일(등기일 포함)부터 1년이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 ⇒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

4).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규정 신설에 따라 관련 지급 대장을 신설하고, 포상금 지급신청서 항목에 추가하는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함.

- 신설: 별지 제3호서식<징수촉탁교부금 세입 포상금 지급대장>
- 변경: 별지 제4호서식(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)
<세입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>

5). 포상금의 지급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88조에 따른 지급 명령에 근거하므로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(안 제8조제2항).
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90조제3항 ⇒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88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 분법으로 「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 표준안」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됨에 따라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

○ 그 주요내용을 보면

- 제명, 안 제2조제1항·제3항 단서, 제5조제1항에서 조례의 제명과 포상금의 명칭 및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 표준조례안에 맞게 정비하고
- 안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별지 제1호서식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경과연수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지급대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하였으며
- 안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취득세 통합에 따라 탈루·은닉 취득세원의 발굴 및 징수기준이 되는 취득일을 ‘납세의무성립일’로 일원화하여 혼선을 방지하고
-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규정 신설에 따라 관련 지급 대장을 신설하고, 포상금 지급신청서 항목에 추가하는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○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〔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〕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년 7월 4일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년 7월 4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7월 14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거창문화원의 지원·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, 군수 및 거창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).
- 2).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문화원사의 소재지와 주요시설, 그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,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에

따른 사용료와 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).

3). 문화원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 등 경비의 보조와 공유재산의 지원 등 거창문화원의 지원·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(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).

4). 그 밖에 문화원사의 관리·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·방법과 보조금의 신청·지원 및 관리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두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위임사항을 제4장 보칙으로 규정함(안 제23조, 제24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문화원사 신축에 따른 위탁관리 근거와 시설 사용료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문화원사의 관리·운영과 거창문화원의 지원·육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
-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년 7월 4일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년 7월 4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7월 14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과 무형문화재의 전승·보존을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설치한 복합문화단지 내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1조, 제2조).
- 2). 무형문화재의 전승·보존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수교육관의 소재지와 그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, 제4조).

- 3).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에 따른 허가사항과 사용제한 사항허가의 취소, 그 밖에 사용자의 관리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, 제6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).
- 4).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료 기준과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, 안 별표).
- 5) 전수교육관 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위탁 및 위탁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, 제15조).
- 6). 그 밖에 전수교육관의 관리·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·방법에 관한 준용 규정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위임사항을 규정함(안 제16조, 제17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에 따른 위탁관리 근거와 시설 사용료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통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승·보존 등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
-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

가. 발의자 : 총무위원회

나. 수정내용 : 별첨

○ 제14조(운영위탁) 제3항□□전수교육관의 운영위탁기간, 갱신기간 5년 이내, 제4항 갱신할 때마다 5년□□을

⇒ 제3항□□전수교육관의 운영위탁기간, 갱신기간 3년 이내, 제4항 갱신할 때마다 3년□□으로 수정

○ “제15조부터 17조까지는” ⇒ 각각 “제16조부터 제18조까지”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.

○ 제15조(지도·감독)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장부,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<p>제14조(운영위탁) ③ 전수교육관의 운영위탁기간은 <u>5년</u>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<u>5년</u> 이내로 한다.</p> <p>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<u>5년</u>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<u><신 설></u> <u>제15조(위탁의 취소)</u> <u>제16조(준용)</u> <u>제17조(시행규칙)</u></p>	<p>제14조(운영위탁) ③----- -----<u>3년</u>----- ----- -----<u>3년</u>-----.</p> <p>④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년</u>-----.</p> <p>제15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장부,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<u>제16조(위탁의 취소)</u> <u>제17조(준용)</u> <u>제18조(시행규칙)</u></p>